

학원설립 · 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31
----------	------

제출연월일 : 2020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제21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학원법」 제21조제3항

2) 추진 필요성: 학원·교습소 관련 법인에 위탁하여 연수의 일관성 및 능률성을 증대시키고, 연수 실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음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교육청에서 수립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전반(교재 제작, 장소 대관, 연수 안내 등)

라. 민간위탁 기간: 2021. 1. 1. ~ 2021. 12. 31.

- 연수결과(성과)에 따라 매년 재계약 여부 결정

마. 수탁자 선정방식

-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 「학원법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에 따라 (사)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
- 교습자 연수: 「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교습소 관련 기관 또는 법인을 지정·고시

바. 예산 규모: 금134,750,000원(금일억삼천사백칠십오만원)

-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예산: 금87,580,000원(금팔천칠백오십팔만원)
- 교습자 연수예산: 금47,170,000원(금사천칠백일십칠만원)

3. 참고사항 : 붙임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나. 관계 법령

2020년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 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

연수 운영 개요

- ▷ 연수기간: 2020. 6. ~ 2020. 11.
- ▷ 연수대상: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
- ▷ 연수형태: 학원·교습소 단체에 위탁 운영
- ▷ 연수내용: 학원 관계 법령 개정사항, 공교육 정상화 정책, 고액 사교육 조장 행위 방지, 성범죄 및 아동학대 예방, 안전관리, 학원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 방향 등
- ▷ 연수예산: 금134,750천원
 - 학원 단체: 83,440천원, 교습소 단체: 51,310천원

I 목 적

- 학원 관계 법령에 기반한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발전 도모
-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갖추어야 할 책무 및 역할 교육
- 외국인강사의 한국 문화 적응 지원 및 사회교육 담당 자질 향상
- 교육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사교육 환경 조성 기여

II

관련 근거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 「학원법」 제15조의4(학원설립·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 「학원법」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
-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3(연수계획)
- 「학원법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26조(연수의 위탁)

2.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1항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1항 및 제2항

3. 「긴급복지지원법」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4항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제1항 및 제2항

4. 안전 및 비상대피 관련 교육

- 「2020년 학원분야 재난대비 대피훈련 추진계획 안내」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037, 2020. 3. 30.)
- 「2020년 국민 안전교육 추진계획(학원장 연수 등) 안내 및 추진실적 제출 요청」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190, 2020. 4. 1.)

Ⅲ 2019년 연수 결과

(단위: 명)

구 분	연 수 결 과						계(%)
	학원설립·운영자		교 습 자		외국인강사		
	대 상	참석(%)	대 상	참석(%)	대 상	참석(%)	
(사)한국학원 총연합회	15,150	12,352 (81.5)	10,841	85 (0.8)	3,583	168 (4.7)	12,605 (42.6)
(사)한국교습소 총연합회		115 (0.8)		7,260 (67.0)		-	7,375 (24.9)
계		12,467 (82.3)		7,763 (67.8)		6,269 (4.7)	19,980 (67.5)

Ⅳ 2020년 연수 운영방향

1. 주요 착안점

- 연수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연수 실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원·교습소 단체에 위탁 연수 실시
- 연수 위치에 따른 집합 용이성을 위해 지역별(동부, 서부, 남부, 북부 등) 연수 운영
- 내국인강사 및 신규 운영자 대상 연수는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연수와 통합하여 운영
- 코로나19로 인해 연수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적극적인 연수 참여 독려 필요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 준수 철저
- 위탁 연수 현장에서 연수와 관련 없는 사익추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교육지원청별 모니터링 실시 예정
- 연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학원·교습소 단체와 지속적 협의

<시·도교육청 회의(2019. 2. 15.) 중 연수 관련 교육부 주요 지적 사항>

- 위탁 연수가 운영자들에게 내실 있는 연수로 운영되기보다 학원·교습소 단체의 ‘조직 확대를 위한 장(場)’으로 활용(연합회 회원 가입·공제사업 홍보 등)
 - 특정업체 홍보 등 연수와 무관한 일정 포함 사례 만연(학원안전공제회)
 - 교재비, 이수증, 비회원 연수비 징구 등 각종 수익자 부담경비 징수활동 만연
- 연수 예산 집행의 비효율 발생
 - 불참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비용 발생
 - 연수 안내 비용(우편물, 핸드폰 문자발송 등)과 관할 교육지원청 행정력 소비 등 업무의 비효율성

2. 연수 기본방침

- 가. 학원 관련 법령(자치법규 포함) 개정사항 및 주요 내용 안내
- 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정책 안내
- 다. 성범죄·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 라.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 마. 학습자 안전 관리 및 비상대피에 대한 교육
- 바. 기타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안내
- 사. 법령 및 정책 관련 내용은 교육지원청 학원업무 담당공무원이 직접 강의
- 아. 연수 현장의 학원·교습소 단체 사익추구행위 금지를 위한 관리·감독

V 연수 세부 실행계획

1. 연수 대상 및 인원

(2020. 3. 기준, 단위: 명)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강사(외국인강사 포함)
14,957	10,301	91,379

※ 연수 시행 시 학원 및 교습소 등록현황 변동으로 대상자 수 변경 가능

2. 연수주관 및 예산운용계획

(2020. 3. 기준, 단위: 명, 천원)

대 상	인 원	예산액	주 관	연수시기
학원설립·운영자	14,957	83,440	(사)한국학원총연합회	6 ~ 11월
교습자	10,301	51,310	(사)한국교습소총연합회(예정)*	
계	25,258	134,750	외국인강사 수(4,495명)를 고려하여 차등 분배 학원 관계자(19,452명), 교습자(10,301명)	

* 2020. 4. 28. 현재 위탁연수기관 지정·고시 행정예고 중

3. 주관별 역할

구 분	주 요 내 용
본 청	연수계획 수립, 위탁계약 체결, 연수교재 및 발표 기본 자료 제공, 연수과정 모니터링, 민원지도, 연수결과 점검, 예산 편성과 집행 및 정산
교육지원청	연수 대상자 명단 제공, 연수 강사 지원, 연수 과정 모니터링, 민원지도, 일정 안내 및 홍보
학원·교습소 단체	연수계획 시행, 연수 홍보 및 안내, 대상자 점검 및 본청 통보, 연수결과 제출, 각종 행정사항 이행 등

4. 주요 연수내용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 관련 법령 안내 ○ 학원 및 교습소 지도·감독 사례 ○ 성범죄·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 ○ 안전관리 및 비상대피 관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안전 및 대피유도훈련 관련 내용 - 대피요령,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관리 등 ○ 개인정보 보호 ○ 감염병 예방 관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 ○ 안전관리 및 비상대피 관련 교육 ○ 개인정보 보호 ○ 감염병 예방 관련 교육 ○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 법령 ○ (외국인강사) 한국 문화 이해

5. 연수 운영 사항

가. 연수교재 구성 및 배포

- 학원 관계 법령 제·개정 및 중점 사항으로 구성
- 학원·교습소 단체는 연수교재를 바탕으로 중점 사항을 포함하여 활용
-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춰 특이 민원, 희귀 사례 등 첨가

나. 연수 일정 홍보 및 참여 안내 협조

- 학원·교습소 단체와 연계된 네트워크 활용
- 관할 교육지원청별 학원·교습소 운영자 대상 적극 참여 독려
- 학원·교습소 단체와 교육지원청 간 협조하여 연수 일정 및 참석 안내
-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연수기간을 감안하여 작년 대비 신속한 연수 일정 구성
- 홈페이지 게시 및 문자 서비스를 통하여 개별적 안내 진행

다. 연수 강의

- 법령 제·개정 사항과 필수 운영사항 위주로 강의
 - 「아동복지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을 강의내용에 포함
 -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안전관리 및 비상대피 관련 교육내용 포함
-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037호(2020. 3. 30.), 3190호(2020. 4. 1.)

라. 연수 모니터링

- 연수 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민원 대처 및 부조리 시정 조치
- 관할 교육지원청 모니터링 요원을 위한 체크리스트 제작 및 배포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관련 내용 포함)

마. 연수평가 및 피드백

- 연수 종료 후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 연수내용, 참석률, 만족도 등 연수결과를 향후 연수계획에 반영

6. 예산 교부 및 재배정액: 금134,750천원

(단위: 명)

주 관	대 상	교부(재배정)액	비 고
한국학원 총연합회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83,440	5월 교부 예정
한국교습소 총연합회(예정)	교습자	51,310	
계		134,750	

7. 업무 추진일정

단 계	시 기	담당기관
연수계획 수립	2020. 4.	본청
위탁연수기관별 집행계획서 제출	2020. 5.	학원·교습소 단체
연수대상자 명단 제출 및 일정 안내 공지	2020. 5.	교육지원청
위탁 계약 후 예산 교부	2020. 5.	본청
연수 실시	2020. 6. ~ 11.	학원·교습소 단체
연수결과 제출 및 정산	2020. 12.	본청 학원·교습소 단체

VI 기대효과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한 학원 관계 법령 및 주요 정책사항 교육을 통해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발전 도모
- 외국인강사의 한국 문화 적응 및 자질 향상
- 안전 관련 교육을 통한 학습자의 안전한 학습환경 확보

VII

행정사항

1. 위탁연수기관

- 연수 집행계획서 제출 및 행정 완비
- 일정 구성 및 장소 대여
- 연수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본청과 협의

2. 교육지원청

- 연수대상자(학원설립·운영자, 강사, 교습자) 명단 제출
- 연수 강사 및 현장 모니터링 지원을 위한 복무 지원
- 원활한 연수 운영을 위해 적극 홍보 및 참석 독려
- 기타 연수 관련 민원 응대. 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

제15조의4(학원설립·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교육감은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학원법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연수를 위탁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동의안의 제출)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 절차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